

정보통신시장 개방과 향후 대응방향



김 영 태
(S.T.M 사장)

UR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은 세계교역질서에서 고립되기를 원치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에 UR 타결에 따른 정보통신시장의 개방내용과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

93년 12월 15일은 세계 역사속에서도 기억될 만한 날이다.

89년 이래 7년동안 계속되어 왔던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당초 협상시한을 3년이나 연장하는 난항을 거듭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마침내 세계경제질서의 혼란과 극심한 경제침체를 탈피하고 2000년대의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교역 규범이 마련됐다.

기준의 라운드가 공산품 교역확대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UR은 80년대 이후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무역투자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국간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농산물 교역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경쟁력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산업분야는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가 세계교역질서로 부터 고립되기를 원치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한편, 이번 UR 타결로 개방이 예정된 정보통신서비스분야는 87년 민간기업에 대해 그룹 VAN(Value Added Network)이 개방된 이래 약 8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의 사업자들과 경쟁하기에는 국내사업자의 사업기반이 확고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내용을 알아본 후 UR 타결로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방의 내용

정보통신서비스는 89년 2월 22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미통신회담의 결과에 의해서 1994년 1월부터 개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86년 9월 우루과이 각료선언에 의해

[표 1] UR 협상관련 한국의 통신분야 자유화 내용

서 비 스 분 야	자 유 화 약 속
부가통신서비스	'94. 1부터 외자제한 없음
on-line 정보검색, 자료처리서비스	외자제한 없음
데이터 단순전송서비스 * (주)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 가능

*(주) : 음성서비스, FAX, 텔레스, 단순회선 재판매는 제외됨

[표 2] 기본통신 다자협상방식의 합의내용

항 목	합 의 내 용
협상목적	기본통신 교역의 점진적 자유화
협상범위	유·무선을 이용한 시내, 시외, 국제 기본통신
협상그룹 창설	협상진행을 위해 “기본통신협상그룹(NGBT)” 창설
참가국 범위	UR 최종서명국 중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개방
협상기간	'94. 4월 UR 각료회의 서명후 1개월 이내에 1차회의를 갖고, '96. 4. 30까지 협상 종결
평화조항	협상기간중에 협상참가국은 협상력 제고를 위한 조치 금지. 단, 기본통신에 관한 상업적 협정이나 정부간 협정체결은 가능
협상감시	NGBT는 협상기간중 평화조항 적용의 이행을 감시

* 현재 17개국(미국, EC, 일본, 한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멕시코, 홍콩, 헝가리, 터키, 칠레,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체코)이 GATT 사무국에 협상 참여의사 표명함.

UR 협상이 시작된 아래 93년 12월 15일 UR 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부가통신서비스의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그 양허내용은 이미 한·미 통신회담에서 개방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표 1] 참조) 그러나 UR 협상의 결과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개방에 국한되지 않고 개방대상에 기본통신서비스분야의 개방논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협상은 1994년 4월부터 1996년 중반 까지 2년여 동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표 2] 참조)

향후 대응과제

통신분야의 개방은 한·미간의 통신협상이 시

작된 실점인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예견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개방에 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내정보통신분야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90년 7월 부가통신분야의 자유화를 포함한 “통신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민간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추세에 발맞추어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기반 확보와 경쟁체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국제적 규모를 갖춘 외국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민간업계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과 정보통신사업 국제화 추진

국내 민간 VAN사업자들은 정부의 통신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경제성과 효율성에 바탕을 둔 정보통신망의 확충을 추진해 온 결과, 이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사업자들도 다수 탄생하였다. 이들 민간사업자는 정보통신사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자체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VAN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사업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세계를 커버하는 독자적인 해외통신망의 구축이 미흡하고 국제 VAN사업자와의 협력도 일부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보다 과감한 국제화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정보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VAN사업자에게 국제적인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채산성면에 있어서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 : VAN사업을 위한 회선요금제도)

또한 이제까지 대부분의 민간 VAN사업자들은 주로 지상계 유선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왔으나, 조만간 국내에서도 보편화 될 위성통신, 무선통신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전개될 종합정보통신망(ISDN)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 트래픽 전송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를 음성·이미지·화상 등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정보통신망 구조를 진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통신미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VAN서비스의 개발과 기술확보가 필요하다.

공정 경쟁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협력체제 구축

민간업계의 큰 바램중 하나는 통신회선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환경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경쟁 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민간업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 VAN사업자 간의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93년 7월 공정경쟁보장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공정경쟁환경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정부의 시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민간통신사업자와의 관계를 기존의 경쟁관계에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민간업계에게 국내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맡기고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외 통신망의 과감한 확장을 추진하는 등 UR 개방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해외진출의 기회로 삼는 기반마련에 역할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개방화 및 국제화에 따른 국가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의 새로운 인재상 설정과 양성

요즈음 기업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 즉, 인재이다. 특히 기술변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정보통신분야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대외 경쟁력제고

는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통신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과거의 기술과 경험에만 익숙한 인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이 과거의 업무합리화·성력화 차원에서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정보시스템(SIS :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의 역할도 “시스템 솔루션(System Solution)”제공에서 “시스템 솔루션(System Solution)”과 “비지니스 솔루션(Business Solution)”을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시스템 기능의 변화와 함께 컴퓨터기술 이용환경도 특정 하드웨어 메이커의 메인프레임(Main Frame) 중심에서 라이트사이징(Right Sizing),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체계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신조류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을 설정하여 필요한 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신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요구되는 인재와 교육과목(Curriculum)을 연동시킨 자격인정제도의 정착에도 민간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보안과 재해대책 확립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업무마비, 컴퓨터범죄 또는 바이러스(Virus) 침해와 같은 정보화의 역기능이 주는 사회적 손실과 위협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장애나 보안에 대한 대책을 선진국과 대등

한 수준으로 조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인원 등 모든 요소에 걸쳐서 다중의 보호·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업계는 통신의 3중화·보안의 3중화·항온항습설비·방재·바이러스 퇴치 전문가 양성·핵킹(Hacking) 방지대책 수립 등을 통해 재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정부는 민간업계가 이러한 각종 보안·재해대책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개방화시대에 의연히 대처

어쨌든 UR 타결에 따라 서비스 개방이 가시화되고 자유로운 교역질서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도 국제간 교역은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교역질서의 새로운 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고객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려는 민간업계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정부도 이러한 민간업계의 노력이 새로운 경쟁환경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을 조성해 나갈 때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방화시대에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